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1~26

제출연월일 : 2001. 7.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개정이유

- 2001년도 구조조정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

주요골자

- 2001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19명 감축
 -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에 따른 3명 증원

개정근거

- 2단계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추진시 준수지침
(경상남도 행정12200~10790, 2001. 5. 12)
-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지침 경상남도 행정(12200~10778, 2001. 5. 10)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37명”을 “541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을 “10명”으로 하며, 총계란 정원 “548명”을 “551명”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집행기관의 정원 1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 다만,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라 증원된 정원 3명 제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37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1명</u></p> <p>총계 : <u>548명</u></p>	<p>제2조 (정원의 총수) 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41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0명</u></p> <p>총계 : <u>551명</u></p>